

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의 관건 : 부자감세 주장 반박

2024년 7월 26일 (金)

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,
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

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의 관건 : 부자감세 주장 반박

2024.7.26.(금) 정책실 초빙연구위원 김 창 배

- 세제 개편 논의가 중산층을 위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권의 '부자감세'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
 - (상속세) △ 중산층도 내야하는 세금으로 변질(2022년 상속세 납부 인원, 2000년 대비 11배 증가)△ 중산층의 자산 형성 및 부의 이전에 장애물로 작용 △ 상속세 취지에 맞게 고액자산가 1%만 내는 세금으로 개선되어야
 - (금투세) △ 상위 1%에만 부과되지만 피해는 1400만 투자자 모두 △ 주식 공제한도 유리하다 해도 투자금 엑소더스 못 막아 △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도 도입 전제가 바뀌었다면 재검토할 필요
 - (종부세) △ 서울시 전체 세대의 약 13%가 종부세 부담 △ 다주택자 종과세는 집값 안정화 실패, 임대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만 양산 △ 국세로 부과하는 종부세는 재산과세의 기본 논거인 '편익과세의 원칙'에 위배

1. 논의의 배경¹⁾

- 최근 종합부동산세·금융투자소득세·상속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이지만, 문제는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'부자감세' 주장
 - 정부와 여당이 세법 개정안을 내놓아봤자 야당의 "부자감세" 와 '부의 세습' 등의 주장에 부딪히면 국회 통과는 물거품이 되고 더 큰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
 - 실제로 이러한 현실론이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7월 세제개편안은 당초 정부의 예고와 기대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
- 따라서 향후 세제 개편 논의가 중산층을 위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야권의 '부자감세'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

2. 野 부자감세 프레임의 허구성

① 상속세

1) 지난 7월 3일 여의도연구원과 당 재정·세제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'중산층 복원 :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' 토론회를 기초로 작성됨

- 초고액 자산가들만 내던 상속세가 중산층도 내야하는 세금으로 변질
 - 2022년 상속세 납부 인원은 2000년 대비 11배 증가, 사망자 대비 상속세 납부 비율 동기간 0.6%에서 5.0%로 급등
 - 상속세 납부 대상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결정세액도 급증
 - 2000년 6400억원 ⇒ 2022년 19조 2600억 원으로 22년간 30배 이상 증가
- 현행 세제 지속되면 2035년에는 수도권 아파트 60% 이상이 상속세 대상
 - 매매가 10억원 이상 아파트 : 2024년 12.1% ⇒ 2030년은 34.1% ⇒ 2035년에는 60% 상회 (한국경제인협회 추정)
- 과도한 상속세²⁾는 결국 중산층의 자산 형성 및 이전에 장애물로 작용
 -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요인으로 주식시장 밸류업 방해
 -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상속세 부담이 늘기 때문에 최대주주 입장에서 주가를 높일 유인이 사실상 없음
 - 부도 또는 피인수합병 기업이 속출하며 일자리 상실의 요인이 됨
 - 상속세율이 70%에 달했던 스웨덴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는데 이는 제약회사 아스트라가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서 영국 제네카에게 피인수 된 것이 계기였음
 - 24년째 높은 세율, 낮은 공제, 과표 구간 고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세 부담 증가
- 상속세 본연의 취지에 맞게 상위 1%(현재 5%)가 내는 세금으로 개선될 필요
 - 상속세 개편 → 49만 가구 면제 → 중산층 자산형성 및 경제 활력에 기여
 - 12,608명(22년 상속세 납부자 하위 80%) x 3.92(가구 구성원 수) x 10년 = 49만명
 - 만약 피상속인의 손자세대까지 포함하면 49만명 x 3.92 = 약 194만명

② 금투세

- 상위 1%에만 부과되지만 피해는 일반 투자자 모두에게 영향
 - 상위 1% 고액 자산가에만 해당되는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자를 위한 폐지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
 - 하지만 상위 1%의 이탈 시 예상되는 자본유출, 주식시장 침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1400만 주식 투자자 모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함

2) △ OECD 2위의 높은 상속세율, △ 최대주주 할증평가 △24년째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낮은 공제액과 과표 구간, △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는 유산세 과세 방식 등

- 2024년 상반기에만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, 코스닥 시장에서 7.4조원 순매도
- 이것이 하위 90%의 일반 투자자가 ‘금투세 폐지’에 더 목소리를 내는 이유³⁾
- 더구나 최근 채권투자 급증 추세를 반영하면 금투세 대상은 수십만명으로 확대
-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16개월간(2023.1~2024.4) 개인이 매수한 채권 순매수액은 53조원임. 인당 1억원을 가정하면 금투세 대상자는 53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됨⁴⁾

○ 주식 공제한도 유리해도 투자금 엑소더스 못 막아

- 주식 공제한도(美250만원 vs. 韓5천만원)가 한국이 유리해 美증시로 이탈 가능성 낮다 라고 주장하고 있음
- 하지만 국내투자자들, 거의 유일한 강점이었던 세제 혜택 사라지면 세금 더 내더라도 미국주식에 투자할 가능성 높음
 - 미국증시는 한국에 비해 밸류에이션 2배, 주주환원을 3배⁵⁾인 상황이기 때문
 - 더구나 한국증시는 잔물배당, 일감 몰아주기, 불공정한 분할·합병 등 고질병으로 만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
 - 이미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내 해외ETF비율이 국내ETF를 역전⁶⁾한 상황

○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도 도입 전제가 바뀌었다면 재검토할 필요

- 2020년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이니 입법 및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일단 시행하고 이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
- 하지만 당시 ‘일부만 납부하는 세금’이라는 여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수월했음을 상기할 필요
- ‘소수 고액 자산가만 해당한다’는 도입 전제가 바뀌었다면 다시 조사해야 함이 마땅하며 더구나 부정적 과급 영향이 심각함에도 합의 이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는 무책임

③ 종부세

○ 당초 소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한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의 세금으로 변화

- 주택가격 상승으로 도입 당시에 비해 종부세 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

3)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‘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’에 개인투자자 5만명 동의 돌파

4) 현재 채권 매매차익 및 만기 차익은 비과세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과세 표준 3억원 이하 차익은 22%(지방세 포함), 3억원 초과 차익은 27.5%(지방세 포함)의 세금 부과

5) 기업실적 증가 시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주가 2배 오르고 주주에게 3배 돌려준다는 의미

6) ‘중개형 ISA’내 해외ETF 비율 4월말 19.7% 국내ETF비율 4월말 7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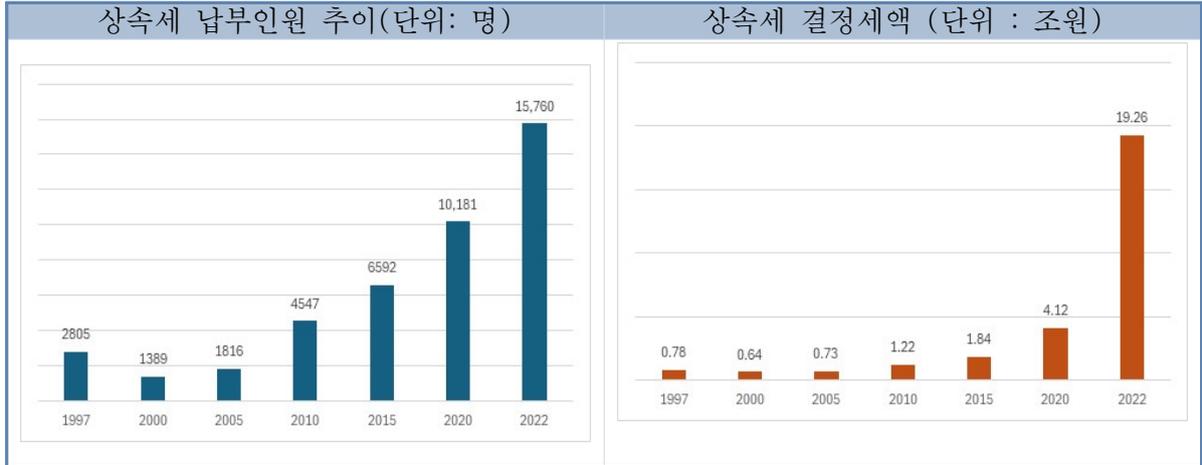
- 일례로 서울시 종부세 대상자는 2018년 23만명에서 2022년 59만명으로 4년만에 약 2.5배 증가, 서울시 전체 세대의 약 13%가 종부세 부담
 - ‘부동산 투기꾼’을 잡겠다며 도입한 종부세가 중산층의 주머니를 터는 세금으로 변질된 셈
- 다주택자 종과세는 집값안정화 실패, 임대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만 양산
- 수도권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안정화에 실패
 - 주택공급이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입지가 양호한 지역 주택보유자들은 사실상 독점기업과 같은 지위를 누리며 인상된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쉽게 전가
 - 이로 인해 수도권 특정지역의 고가주택을 경쟁적으로 매입하는 소위 ‘똥똥한 한 채’ 현상이 증가하며 오히려 특정지역 집값 상승
 - 특정지역 주택의 집중 소유는 세금이 아닌 공정거래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이 합당
 - 임대시장의 한 축인 다주택자에 대한 종과세로 인해 민간 임대주택공급 위축
 - 국제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왜곡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일 비례세 방식을 보편적으로 채택
- 종부세는 재산과세의 기본 논거인 ‘편익과세의 원칙’에 위배
- 첫째, 현행 종부세제는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음
 - 하지만 중저가주택이나 고가주택 모두 동일하게 재산 가치에 비례하여 편익을 얻기에 세금도 그에 비례하여 내는 것이 형평성에 맞음
 - 둘째, 현행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과세하고 있음
 - 지역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편익이 주거여건을 개선시키고 부동산 가치도 상승시키기에 편익의 수혜자인 부동산 보유자가 재정비용을 담당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재산과세 논거. 이를 고려할 때 종부세는 지방세가 되어야 함

3. 향후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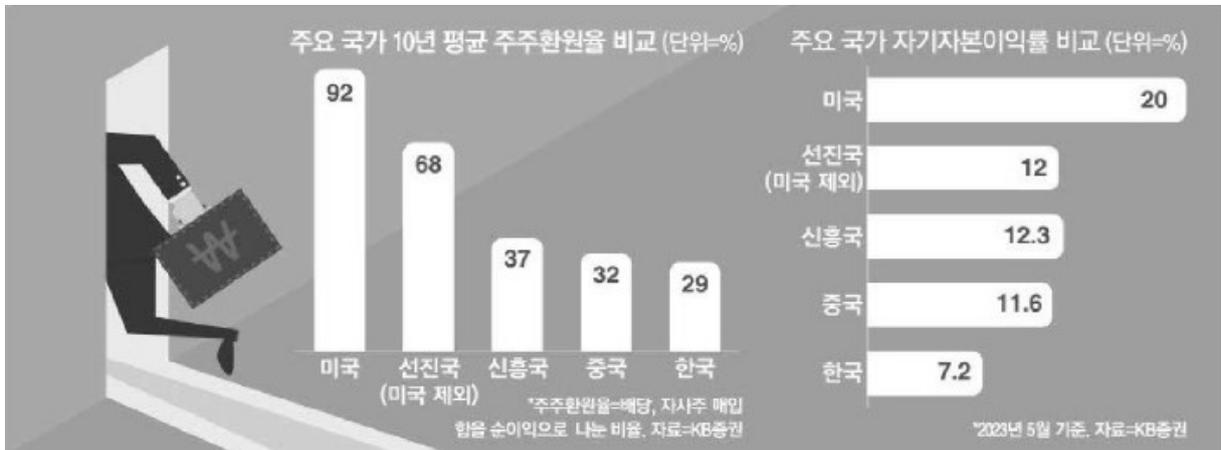
- 정부, 25일 상속세·금투세·종부세 등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 발표
- 상속세 : △ 과표 및 세율 조정(1억~30억원 초과 과표 10~50% 세율 → 2억~10억원 초과 과표 10~40% 세율) △ 자녀 인적공제 확대(자녀 1인당 5000만원 → 5억원) △ 대기업 최대주주에 최고세율 60%를 적용하는 할증제 폐지
 - 금투세 : 개정안에 관련 조항 삭제하며 금투세 도입을 백지화
 - 종부세 : 현행 유지

- 정부의 예고나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나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옴
 - 정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 후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
- 이참에 여야는 과도한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기업인들까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 해법을 도출해야 함
 - 여당은 세제의 합리적 개편이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내부반발에 주춤한 야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
 - 야당도 상속세·금투세·종부세 완화 등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낸 것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'부자 감세' 프레임을 버리고 정부·여당의 세법개정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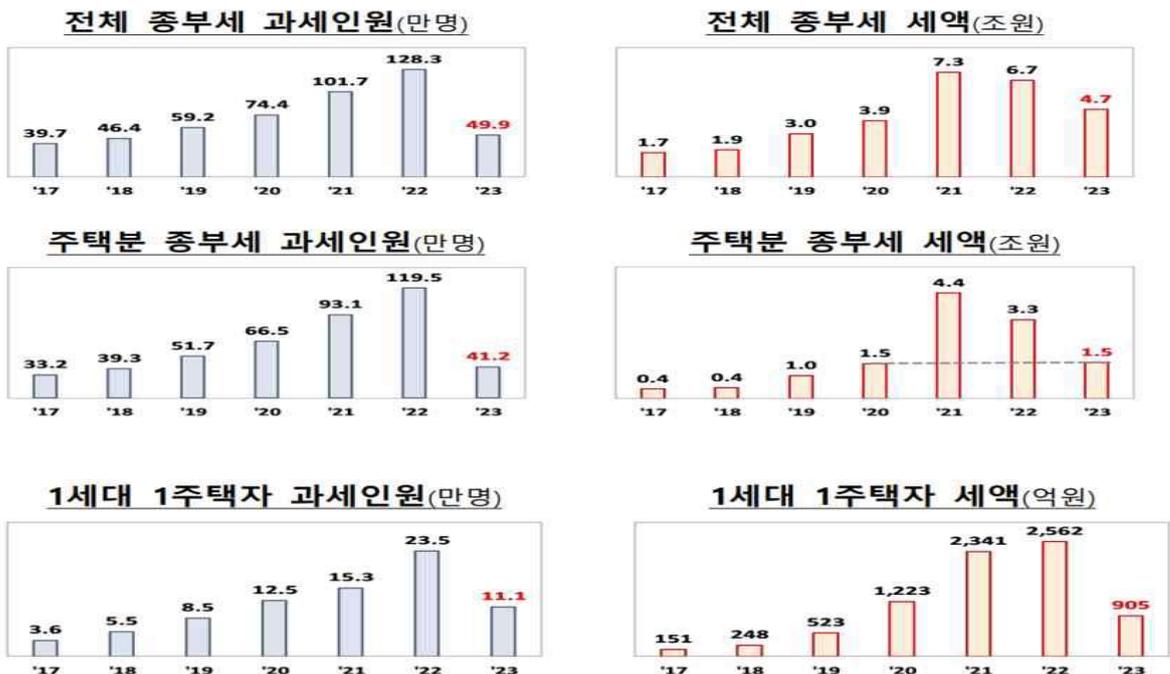
<부표 1> 상속인 납부인원 및 상속세 결정세액 추이



<부표 2> 주요국 주주환원율과 자가자본이익률



<부표 3> 종부세 과세 현황



주 : 2023년 종부세 고지 보도자료, 기획재정부, 2023.11.29.